|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693호다음과 같이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실시조례>를 공포하는 바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총리 리커챵(李克强)2017년 12월 25일제1장 총칙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이하 '환경보호세법'으로 약칭)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제2조 환경보호세법 별첨 <환경보호세 세목세액표>에서 언급한 기타 고체폐기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환경보호세법 제6조 제2항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한다.제3조 환경보호세법 제5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도농오수집중처리장소라 함은 사회대중을 위하여 생활오수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지칭하며 공업단지•개발구 등 공업밀집구역 내의 기업체•사업체 및 기타 생산경영자를 위하여 오수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와 기업체•사업체 및 기타 생산경영자가 자체건설•자체사용하는 오수처리 장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제4조 성급 인민정부가 정한 규모와 기준에 도달하였으며 오염물질 배출구가 설치되어 있는 가축•가금 양식장은 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축•가금 양식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하여 법에 따라 종합이용 및 무해화 처리를 진행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환경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환경보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제2장 과세근거제5조 과세대상 고체폐기물의 과세근거는 고체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확정한다. 당기(當期) 과세대상 고체폐기물 발생량에서 당기(當期) 과세대상 고체폐기물 저장량•처리량•종합이용량을 공제한 잔액을 고체폐기물 배출량으로 인정한다.전 항에서 고체폐기물 저장량•처리량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의 환경보호표준에 부합되는 시설•장소에서 저장 또는 처리하는 고체폐기물 수량을 지칭하며; 고체폐기물 종합이용량이라 함은 국무원 발전개혁주관부서, 공업및정보화주관부서의 자원 종합이용 요구와 국가 및 지방의 환경보호표준에 따라 종합이용하는 고체폐기물 수량을 지칭한다.제6조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그의 당기(當期) 과세대상 고체폐기물 발생량을 고체폐기물 배출량으로 인정한다.(1) 고체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는 경우;(2) 허위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제7조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의 과세근거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근거하여 환산한 오염당량값에 근거하여 확정한다.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당기(當期)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발생량을 오염물질 배출량으로 인정한다.(1) 법에 따라 오염물질 자동감시 설비를 설치•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물질 자동감시 설비를 환경보호주관부서의 감독관리설비와 연결시키지 아니한 경우;(2) 오염물질 자동감시 설비를 훼손하거나 무단 이동•개변(改變)하는 경우;(3) 오염물질 감시 데이터를 변조•위조하는 경우;(4) 암관(暗管), 침투정(渗井), 침투갱(渗坑), 주입 또는 희석화 배출 및 오염예방시설의 비정상적 운영 등 방식을 이용하여 과세대상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경우;(5) 허위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제8조 두개 이상의 배출구를 통해 과세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각 배출구로 배출되는 과세대상 오염물질에 대해 각각 별도로 환경보호세를 과세한다.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보유한 납세자의 오염물질 배출구는 오염물질배출허가증에 기재된 오염물질 배출구에 따라 확정한다.제9조 환경보호세법 제10조 제(2)호에 해당되는 납세자가 오염물질에 대한 자체감시를 통해 획득한 감시 데이터가 국가의 관련 규정과 감시규범에 부합하는 경우 환경보호세법 제10조 제(2)호에 규정한 감시기구에 의해 발행된 감시 데이터로 간주한다.제3장 환경보호세의 감면제10조 환경보호세법 제13조에서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치라 함은 납세자가 설치•사용하는 오염물질 자동감시 설비에 의해 자동적으로 감시된 당월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 농도치의 시간당 평균치에 대한 재평균값 또는 과세대상 수질오염물질 농도치의 일평균치에 대한 재평균값 또는 감시기구에 의해 감시된 당월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농도치의 평균치를 지칭한다.환경보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감면하는 경우 전 항에 규정한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 농도치의 시간당 평균치 또는 과세대상 수질오염물질 농도치의 일평균치와 감시기구에 의해 감시된 당월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농도치가 모두 국가 및 지방이 규정한 오염물질배출표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제11조 환경보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감면하는 경우 각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제4장 징수관리제12조 세무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환경보호세 납세신고 접수, 조세정보 비교대조, 세금의 국고납입 등 직책을 이행한다.환경보호주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과세대상 오염물질 감시관리를 담당하고 오염물질 감시규범을 제정 및 완비한다.제13조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환경보호세 징수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환경보호세 징수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점을 적시에 조율하고 해결해야 한다.제14조 국무원 세무주관부서•환경보호주관부서는 조세정보 공유 플랫폼에 관한 기술표준과 데이터 수집•저장•전송•조회•사용에 관한 규범을 제정한다.제15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조세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환경보호 감독관리 과정에서 획득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세무기관으로 전송하여야 한다.(1) 오염물질배출업체의 명칭, 통일사회신용코드, 오염물질 배출구, 오염물질 배출 종류 등 기본 정보;(2) 오염물질배출업체의 오염물질 배출 데이터(오염물질 배출량,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농도치 등을 포함한 데이터);(3) 오염물질배출업체의 환경보호법 위반 및 행정처벌 상황;(4) 세무기관이 재확인을 요청한 납세자의 납세신고 데이터•자료 이상 또는 규정 기한 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재확인 의견;(5) 세무기관으로 전송하기로 합의한 기타 정보.제16조 세무기관은 조세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환경보호세 조세정보를 환경보호주관부서로 전송하여야 한다.(1) 납세자의 기본 정보;(2) 납세신고 정보;(3) 세금 국고납입, 세액 감면, 세금 체납 및 리스크•의문점 등 정보;(4) 납세자의 세법 위반 및 행정처벌 상황;(5) 납세자의 납세신고 데이터•자료 이상 또는 납세자가 규정 기한 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정보;(6) 환경보호주관부서로 전송하기로 합의한 정보.제17조 환경보호세법 제17조에서 과세대상 오염물질 배출지라 함은 다음 각 호를 지칭한다.(1)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배출구 소재지;(2) 과세대상 고체폐기물 발생지;(3) 과세대상 소음 발생지.제18조 세무기관 사이에 다지역에서 과세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납세자에 대한 조세징수 관할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쟁의 각 당사자가 징수관리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을 통한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공동의 상급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결정한다.제19조 세무기관은 환경보호주관부서로부터 전송받은 오염물질배출업체 정보에 의거하여 납세자를 인식해야 한다.환경보호주관부서로부터 전송받은 오염물질배출업체 정보에 해당 정보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세무기관이 납세자가 최초로 환경보호세 납세신고 수속 이행 시 납세자로 인식하고 관련 정보를 환경보호주관부서로 전송한다.제20조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대상 오염물질 배출 정보 또는 납세자가 적용한 오염물질 배출계수, 물질수지 계산방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세무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제21조 납세자가 신고한 오염물질 배출 데이터가 환경보호주관부서로부터 전송받은 관련 데이터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보호주관부서로부터 전송받은 데이터에 따라 과세대상 오염물질의 과세근거를 확정한다.제22조 환경보호세법 제20조 제2항에서 납세자의 납세신고 데이터•자료 이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는 아니한다.(1) 납세자가 신고한 당기(當期) 과세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직전연도 동기에 비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경우;(2) 납세자의 단위제품 오염물질 배출량이 동일 유형의 납세자에 비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경우.제23조 세무기관 및 환경보호주관부서는 납세자를 위하여 환겨보호세 납부에 관한 지도, 교육훈련 및 자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제24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환경보호세 세무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제25조 납세자는 조세징수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 오염물질 감시 및 관리 자료를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제5장 부칙제26조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1월 2일 국무원이 공포한 <오염물질배출비 징수•사용 관리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693号现公布《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实施条例》，自2018年1月1日起施行。总理　　李克强2017年12月25日第一章　总　则第一条　根据《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以下简称环境保护税法），制定本条例。第二条　环境保护税法所附《环境保护税税目税额表》所称其他固体废物的具体范围，依照环境保护税法第六条第二款规定的程序确定。第三条　环境保护税法第五条第一款、第十二条第一款第三项规定的城乡污水集中处理场所，是指为社会公众提供生活污水处理服务的场所，不包括为工业园区、开发区等工业聚集区域内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提供污水处理服务的场所，以及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自建自用的污水处理场所。第四条　达到省级人民政府确定的规模标准并且有污染物排放口的畜禽养殖场，应当依法缴纳环境保护税；依法对畜禽养殖废弃物进行综合利用和无害化处理的，不属于直接向环境排放污染物，不缴纳环境保护税。第二章　计税依据第五条　应税固体废物的计税依据，按照固体废物的排放量确定。固体废物的排放量为当期应税固体废物的产生量减去当期应税固体废物的贮存量、处置量、综合利用量的余额。前款规定的固体废物的贮存量、处置量，是指在符合国家和地方环境保护标准的设施、场所贮存或者处置的固体废物数量；固体废物的综合利用量，是指按照国务院发展改革、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关于资源综合利用要求以及国家和地方环境保护标准进行综合利用的固体废物数量。第六条　纳税人有下列情形之一的，以其当期应税固体废物的产生量作为固体废物的排放量：（一）非法倾倒应税固体废物；（二）进行虚假纳税申报。第七条　应税大气污染物、水污染物的计税依据，按照污染物排放量折合的污染当量数确定。纳税人有下列情形之一的，以其当期应税大气污染物、水污染物的产生量作为污染物的排放量：（一）未依法安装使用污染物自动监测设备或者未将污染物自动监测设备与环境保护主管部门的监控设备联网；（二）损毁或者擅自移动、改变污染物自动监测设备；（三）篡改、伪造污染物监测数据；（四）通过暗管、渗井、渗坑、灌注或者稀释排放以及不正常运行防治污染设施等方式违法排放应税污染物；（五）进行虚假纳税申报。第八条　从两个以上排放口排放应税污染物的，对每一排放口排放的应税污染物分别计算征收环境保护税；纳税人持有排污许可证的，其污染物排放口按照排污许可证载明的污染物排放口确定。第九条　属于环境保护税法第十条第二项规定情形的纳税人，自行对污染物进行监测所获取的监测数据，符合国家有关规定和监测规范的，视同环境保护税法第十条第二项规定的监测机构出具的监测数据。第三章　税收减免第十条　环境保护税法第十三条所称应税大气污染物或者水污染物的浓度值，是指纳税人安装使用的污染物自动监测设备当月自动监测的应税大气污染物浓度值的小时平均值再平均所得数值或者应税水污染物浓度值的日平均值再平均所得数值，或者监测机构当月监测的应税大气污染物、水污染物浓度值的平均值。依照环境保护税法第十三条的规定减征环境保护税的，前款规定的应税大气污染物浓度值的小时平均值或者应税水污染物浓度值的日平均值，以及监测机构当月每次监测的应税大气污染物、水污染物的浓度值，均不得超过国家和地方规定的污染物排放标准。第十一条　依照环境保护税法第十三条的规定减征环境保护税的，应当对每一排放口排放的不同应税污染物分别计算。第四章　征收管理第十二条　税务机关依法履行环境保护税纳税申报受理、涉税信息比对、组织税款入库等职责。环境保护主管部门依法负责应税污染物监测管理，制定和完善污染物监测规范。第十三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对环境保护税征收管理工作的领导，及时协调、解决环境保护税征收管理工作中的重大问题。第十四条　国务院税务、环境保护主管部门制定涉税信息共享平台技术标准以及数据采集、存储、传输、查询和使用规范。第十五条　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通过涉税信息共享平台向税务机关交送在环境保护监督管理中获取的下列信息：（一）排污单位的名称、统一社会信用代码以及污染物排放口、排放污染物种类等基本信息；（二）排污单位的污染物排放数据（包括污染物排放量以及大气污染物、水污染物的浓度值等数据）；（三）排污单位环境违法和受行政处罚情况；（四）对税务机关提请复核的纳税人的纳税申报数据资料异常或者纳税人未按照规定期限办理纳税申报的复核意见；（五）与税务机关商定交送的其他信息。第十六条　税务机关应当通过涉税信息共享平台向环境保护主管部门交送下列环境保护税涉税信息：（一）纳税人基本信息；（二）纳税申报信息；（三）税款入库、减免税额、欠缴税款以及风险疑点等信息；（四）纳税人涉税违法和受行政处罚情况；（五）纳税人的纳税申报数据资料异常或者纳税人未按照规定期限办理纳税申报的信息；（六）与环境保护主管部门商定交送的其他信息。第十七条　环境保护税法第十七条所称应税污染物排放地是指：（一）应税大气污染物、水污染物排放口所在地；（二）应税固体废物产生地；（三）应税噪声产生地。第十八条　纳税人跨区域排放应税污染物，税务机关对税收征收管辖有争议的，由争议各方按照有利于征收管理的原则协商解决；不能协商一致的，报请共同的上级税务机关决定。第十九条　税务机关应当依据环境保护主管部门交送的排污单位信息进行纳税人识别。在环境保护主管部门交送的排污单位信息中没有对应信息的纳税人，由税务机关在纳税人首次办理环境保护税纳税申报时进行纳税人识别，并将相关信息交送环境保护主管部门。第二十条　环境保护主管部门发现纳税人申报的应税污染物排放信息或者适用的排污系数、物料衡算方法有误的，应当通知税务机关处理。第二十一条　纳税人申报的污染物排放数据与环境保护主管部门交送的相关数据不一致的，按照环境保护主管部门交送的数据确定应税污染物的计税依据。第二十二条　环境保护税法第二十条第二款所称纳税人的纳税申报数据资料异常，包括但不限于下列情形：（一）纳税人当期申报的应税污染物排放量与上一年同期相比明显偏低，且无正当理由；（二）纳税人单位产品污染物排放量与同类型纳税人相比明显偏低，且无正当理由。第二十三条　税务机关、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无偿为纳税人提供与缴纳环境保护税有关的辅导、培训和咨询服务。第二十四条　税务机关依法实施环境保护税的税务检查，环境保护主管部门予以配合。第二十五条　纳税人应当按照税收征收管理的有关规定，妥善保管应税污染物监测和管理的有关资料。第五章　附　则第二十六条　本条例自2018年1月1日起施行。2003年1月2日国务院公布的《排污费征收使用管理条例》同时废止。　　　 　　 |